



# 베이비박스 법적 지원 관련 미국 입법례



2020-2호 (통권 제116호)

##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발행인 현진권 | 작성자 김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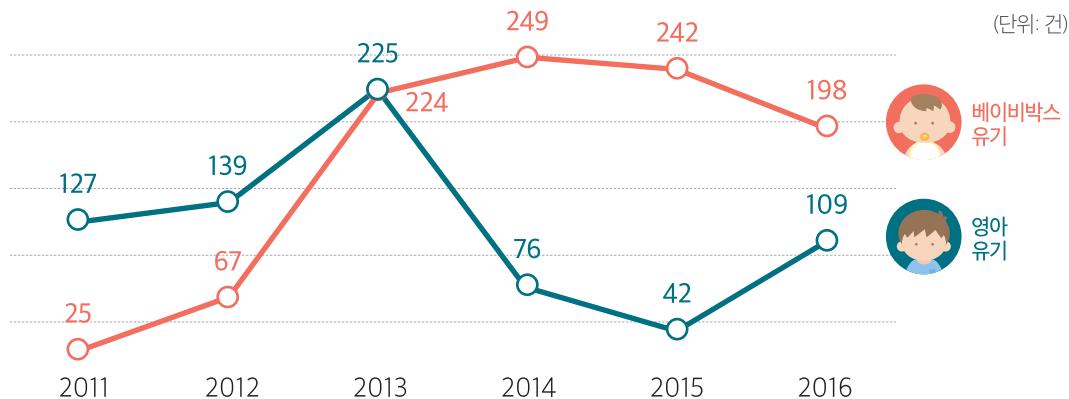
- 2011년 8월 4일 「입양특례법」(시행 2012.8.5.)<sup>1)</sup> 전부개정에 따라 아동입양 절차가 아동의 복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허가제가 도입되고 해외입양이 아닌 국내입양 중심으로 입양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입양제도의 전환이 오히려 영아 유기 사례가 급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sup>2)</sup> 유기된 영아의 상당수가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베이비박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재정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 미국 각 주(州)에서는 일명 “아기모세법(Baby Moses laws)” 또는 “영아피난소법(Infant Safe Haven Laws)”을 제정하여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의 영아유기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1) 개정 전 법 제명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었다.

2) 엄주희,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2016.2), 93쪽.

## 전국 영아, 베이비박스 유기 현황

(단위: 건)



출처: 연합뉴스, “부모가 날 버렸어요”…영아 유기 갈수록 증가, 2018.1.13.

### 시사점

-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한 부모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행위는 부모의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과 유기된 영아의 생명권 보호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영아유기 행위에 대하여 영아유기죄(제272조)로 처벌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아유기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상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75조).<sup>3)</sup>
- 미국에서는 영아유기 행위에 대해서 물론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50개 주 전부에서 일명 ‘영아피난소법(Infant Safe Haven Laws)’을 제정하여<sup>4)</sup>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거나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부모가 영아를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두고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sup>5)</sup> 그 부모(parent) 또는 부모의 대리인(an agent of parent)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sup>6)</sup>

3)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미혼모나 영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모가 영아살해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며, 특히 누가 누구인지 다른 작은 마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베이비박스 제도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독일, 스위스 등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다(By Vicky Baker, “Drop-off baby boxes: Can they help save lives in the US?”, BBC News, 23 January 2019).

5) 안전피난소 이용 통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8년 1월2일까지 총 4,015건 중 불법적 유기행위가 1,465건이었다(<https://www.nationalsafehavenalliance.org/statistics/>).

6) Arizona, Delaware, Florida, Illinois, Kansas, Kentucky, Mississippi, Missouri, Ohio, Oklahoma, South Carolina, Texas, Utah,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Infant Safe Haven Laws」 p1. available at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ystemwide/laws-policies/state/>).

## ◀◀◀◀◀ 최신 외국입법정보

우리나라 영유아·아동 연령기준		미국 각 주별 영아의 연령기준	
법률/판례	연령	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72시간	Alabam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Michigan, Mississippi, Tennessee, Utah, Washington, Wisconsi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	7일	Florida, Georgia, Massachusetts, Minnesota, New Hampshire, North Carolina, Oklahoma
『영유아보육법』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10일	Maryland
하급심 판례	영아살해죄의 객체인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대해서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고 판시(대구 고등법원 1968.3.26. 선고 67 노317 판결)	14일	Delaware, Iowa, Virginia, Wyoming, the District of Columbia
		21일	Alaska
		1달	Arkansas, Connecticut, Idaho, Illinois, Indiana, Kentucky, Louisiana, Maine, Montana, Nebraska, Nevada, New Jersey, New York, Ohio,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West Virginia
		45일	Kansas, Missouri
		60일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xas
		90일	New Mexico
		1년	North Dakota

출처: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Infant Safe Haven Laws」, p.2

-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영아를 양육할 능력이나 상황이 안 되는 부모가 영아를 안전한 베이비박스(영아보호시설)에 두더라도 이러한 부모의 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사회적·국가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 다만,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는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형법상 영아유기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을 출생 후 7일 내지 1달 미만의 영아로 한정하며, 유기의 주체는 영아의 부모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두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베이비박스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교회 등 자선단체보다는 영아에게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돌봄서비스를 즉시 제공하기 위해 공공병원, 소방서와 같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또한 유기된 영아와 친부모와의 재결합을 위한 가정위탁제도의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가는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아기의 건강정보와 가족병력, 재결합 의사 등을 묻는 설문지를 비치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Penal Code」(「형법」)과 「Health and Safety Code」(「보건안전법」)

- 영아피난소법의 적용을 받는 ‘영아[infant, 嬰兒]<sup>7)</sup>’의 기준에 대해서는 주법에 따라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에는 생후 72시간 미만의 신생아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19개 주에서는 출생 후 1달까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후 72시간 미만인 영아의 부모 또는 법적 양육권이 있는 다른 개인이 안전보호시설(소방청이 지정한 장소, 병원 내 지정된 장소 등)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해당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영아유기죄에 대하여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71.5조).
- 안전보호시설(베이비박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맡겨진 영아의 의료 정보 설문지(medical information questionnaire)가 부모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 정보 설문지와 관련하여 얻은 부모에 관한 개인 식별 정보(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보건안전법 제1255.7조).
- 특히 영아의 의료 정보 설문지에는 장래 영아에게 닥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 대비하여 암을 포함한 일부 질병에 대한 가족력에 대한 정보와 생명구조를 위해 친척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미국 일리노이주 「Abandoned Newborn Infant Protection Act」(「유기영아보호법」)

- 미국 일리노이주의 영아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아(newborn infant)’는 학대받지 않은 생후 30일 미만의 아이를 말하며, 학대나 유기의 증거가 없는 한 부모는 익명성이 보장된 채로 언제든지 병원, 경찰서, 소방서 또는 응급의료시설에 아이를 두고 갈 수 있으며 추적당하지 아니한다(제2/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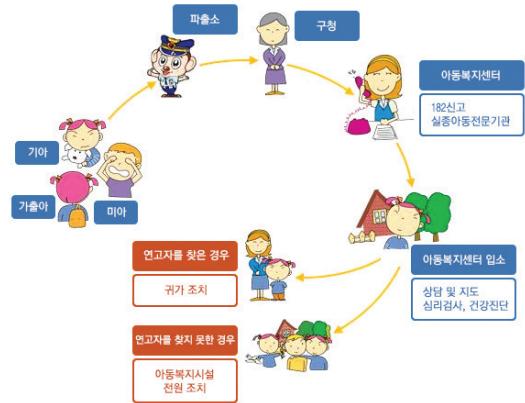
7) 미국의 각 주(州)마다 ‘infant’의 기준을 생후 72시간부터 30일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고, ‘minor child’, ‘newborn infant’, ‘baby’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신생아, 영아, 아기 등을 통일하여 ‘영아’로 사용하기로 한다.

- 영아를 받은 병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시설은 부모에게 정보패킷(information packet)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활용 동의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초 영아를 보호시설에 맡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친권의 상실과 입양에 관한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항이 정보패킷에 포함되어야 한다(제2/35 조제(a항)).

## 국내현황

- 영유아 유기 및 살해 건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영아 유기·살해 건수는 2014년 87건, 2015년 57건, 2016년 116건, 2017년 177건, 2018년 8월까지 142건으로 집계 되었다.

-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입양이 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아기는 지역아동복지센터를 거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게 된다.



<기아/미아 입·퇴소 처리도>  
출처: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제251조, 영아살해죄),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272조, 영아 유기죄), 영아를 유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75조제1항, 영아유기치사상죄)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형법상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에서 '영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앞의 우리나라 영유아·아동 연령기준표 참조).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의 원문과 번역문

### 「California Penal Code」

**271.5** (a) No parent or other individual having lawful custody of a minor child 72 hours old or younger may be prosecuted for a violation of Section 270, 270.5, 271, or 271a if he or she voluntarily surrenders physical custody of the child to personnel on duty at a safe-surrender site.  
(b)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afe-surrender site” has the same meaning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255.7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

...

###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1255.7.** (a) (1)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afe-surrender site” means either of the following:  
(A) A location designated by the board of supervisors of a county or by a local fire agency...  
(B) A location within a public or private hospital...  
(2)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parent” means a birth parent of a minor child who is 72 hours old or younger.  
...  
(b) Personnel on duty at a safe-surrender site shall accept physical custody of a minor child 72 hours old or younger pursuant to this section if a parent or other individual having lawful custody of the child voluntarily surrenders physical custody of the child to personnel who are on duty at the safe-surrender site. Safe-surrender site personnel shall ensure that a qualified person does all of the following:  
(1) Places a coded, confidential ankle bracelet on the child.  
(2) Provides, or makes a good faith effort to provide, to the parent or other individual surrendering the child a copy of a unique, coded, confidential ankle bracelet identification in order to facilitate reclaiming the child pursuant to subdivision (f). (...)  
(3) Provides, or makes a good faith effort to provide, to the parent or other individual surrendering the child a medical information questionnaire, which may be declined, voluntarily filled out and returned at the time the child is surrendered, or later filled out and mailed in the envelope provided for this purpose. This medical information questionnaire shall not require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the child or the parent or individual surrendering the child, other than the identification code provided in the ankle bracelet placed on the child. Every questionnaire provid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begin with the following notice in no less than 12-point type:

###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71.5조** (a) 생후 72시간 미만인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양육권을 갖고 있는 다른 개인이 안전보호시설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해당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270조, 제270.5조, 제271조 제271a조의 위반에 대하여 기소되지 아니한다.

(b) 이 조의 목적상 “안전보호시설”은 「보건안전법」 제1255.7조 (a)항 (1)호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다.

...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제1255.7조** (a)(1) 이 법의 목적상 “안전보호시설”란 다음 목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 카운티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지역 소방청이 지정한 장소...

(B) 공립 또는 사립 병원 내의 장소

(2) 이 조의 목적상 “부모”란 생후 72시간 미만인 미성년자의 친부모를 의미한다.

...

(b) 안전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부모 또는 그 자녀에 대한 합법적 양육권을 가진 다른 개인이 안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물리적 양육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조에 따라 생후 72시간 미만인 미성년자의 물리적 양육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시설 직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해당 아동에게 암호화된 비밀 발찌를 채운다.

(2) (f)항에 따라 아동의 반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유하고 암호화된 비밀 발찌 신분증 사본을 그 아동을 양도하는 부모 또는 그 밖의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러나 발찌 신분증의 소지가 자녀의 양육권 또는 양육권을 확립하는 것은 아니다. (...)

(3) 의료 정보 설문지를 그 아동을 양도하는 부모 또는 그 밖의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는 아동이 양도될 때 거부되거나 자발적으로 작성 및 반환될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 이후에 작성되어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 이 의료 정보 설문지는 아동에게 부착된 발찌에 제공된 식별 코드를 제외하고 아동 또는 아동을 양도하는 부모 또는 개인에 관한 식별 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설문지는 12 포인트 이상의 다음 통지로 시작하여야 한다.

NOTICE: THE BABY YOU HAVE BROUGHT IN TODAY MAY HAVE SERIOUS MEDICAL NEEDS IN THE FUTURE THAT WE DON'T KNOW ABOUT TODAY. SOME ILLNESSES, INCLUDING CANCER, ARE BEST TREATED WHEN WE KNOW ABOUT FAMILY MEDICAL HISTORIES. IN ADDITION, SOMETIMES RELATIVES ARE NEEDED FOR LIFE-SAVING TREATMENTS. TO MAKE SURE THIS BABY WILL HAVE A HEALTHY FUTURE, YOUR ASSISTANCE IN COMPLETING THIS QUESTIONNAIRE FULLY IS ESSENTIAL. THANK YOU.

### 「Illinois Abandoned Newborn Infant Protection Act」

#### § 2/10 - Definitions

In this Act: (...)

“Newborn infant” means a child who a licensed physician reasonably believes is 30 days old or less at the time the child is initially relinquished to a hospital, police station, fire station, or emergency medical facility, and who is not an abused or a neglected child.

#### § 2/25 - Immunity for relinquishing person

(a) The act of relinquishing a newborn infant to a hospital, police station, fire station, or emergency medical facilit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does not, by itself, constitute a basis for a finding of abuse, neglect, or abandonment of the infant pursuant to the laws of this State nor does it, by itself, constitute a violation of Section 12C-5 or 12C-10 the Criminal Code of 2012.

(b) (...)

#### § 2/30 - Anonymity of relinquishing person

If there is no evidence of abuse or neglect of a relinquished newborn infant, the relinquishing person has the right to remain anonymous and to leave the hospital, police station, fire station, or emergency medical facility at any time and not be pursued or followed. Before the relinquishing person leaves the hospital, police station, fire station, or emergency medical facility, the hospital, police station, fire station, or emergency medical facility personnel shall (i) verbally inform the relinquishing person that by relinquishing the child anonymously, he or she will have to petition the court if he or she desires to prevent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nd regain custody of the child and (ii) shall offer the relinquishing person the information packet described in Section 35 of this Act. (...)

주의 사항 : 오늘 당신이 낳은 아기는 우리가 오늘날 알지 못하는 미래에 심각한 의학적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을 포함한 일부 질병은 우리가 가족력에 대해 알고 있을 때 가장 잘 치료됩니다. 때로는 생명구조 치료를 위해 친척이 필요합니다. 이 아기가 건강한 미래를 누리게 하려면 이 설문지를 완성하여 줄 당신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 「일리노이주 유기영아보호법」

#### 제2/10조 - 정의 규정

이 법에서: (...)

“영아”라 함은 병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시설에 최초 맡겨질 당시에 전문의가 생후 30일 미만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아이로서 학대나 유기되지 아니한 아이를 의미한다.

#### 제2/25조 - 영아유기에 대한 면책

(a) 이 법에 따라 영아를 병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시설에 맡기는 행위 그 자체는 주법에 따른 영아 학대, 유기의 사실인정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2012년 형법 제12C-5조 또는 제12C-10조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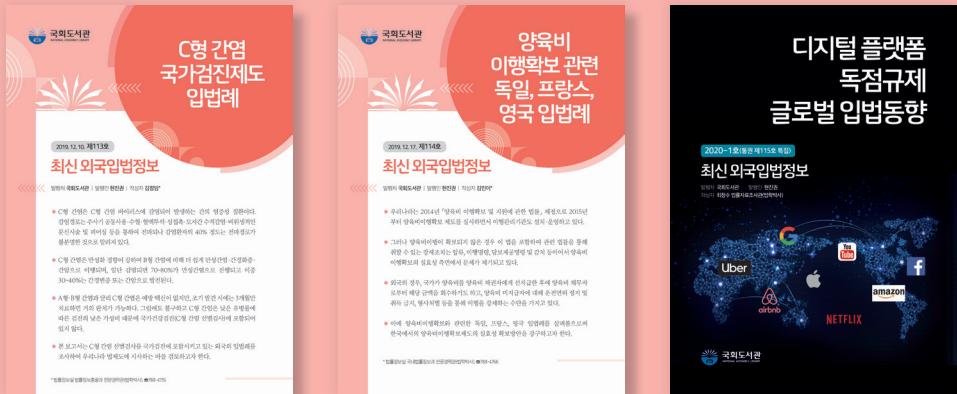
(b) (...)

#### 제2/30조 - 부모에 대한 익명성

맡겨진 영아에 대한 학대나 유기의 증거가 없다면 영아를 맡긴 부모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언제든지 병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추적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부모가 병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전에 보호시설의 직원은 (i) 구두로 해당 아이를 익명으로 맡김으로써 부모가 친권의 소멸을 막고 양육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ii) 이 법의 제35조에 규정된 정보파ikit을 그 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0. 2. 11. 통권 제116호

# 최신 외국입법정보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은『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신 외국입법정보』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http://law.na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702-14

ISSN 2586-6869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률정보실

